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이돌봄인력 국가자격제·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 〉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0758호)

2024.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정의 신설	4
2.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완화 및 범죄경력조회 주체 변경	7
3.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13
4. 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 수행 주체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 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	29
5. 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 신설 및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마련	37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43
7. 여성가족부장관 등의 지정명령권 신설 및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 사 결과 공표 등	60
8. 부칙 등	65

※ 참고자료	68
1. 주요 내용 현행·개정안 비교	68
2. 국가자격제도 관련 국내 입법례 현황	70
3. 돌봄인력 관리 체계 해외 사례	7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정재의원 등 108인

나. 발 의 일 : 2024. 6. 20.

다.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 등의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가구는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베이비시터 등 민간 육아도우미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임. 민간 서비스에 대한 품질 제고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저출생 문제 개선과 아동의 복지증진 및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사’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제4호 및 제6호).

나. 아이돌봄사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조회,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및 제7조).

다.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명의대여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

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5).

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기준에 미

달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지정 또는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

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 및 중요 사항의 변경 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37조).

IV. 검토의견

1.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정의

개정안은 아이돌봄인력 국가자격제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정의를 변경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 또는 등록된 기관을 모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칭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아이돌봄사”란 제7조제1항----- ----- <u>취득한</u>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아이돌봄사 정의

현행법¹⁾은 아이돌봄 인력과 관련하여 제11조²⁾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아이돌보미와 육아도우미로 구분하고 있음.

개정안은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과 상관없이 일정 교육을 수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는 아이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면서 육아도우미는 존치하고 있는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됨을 법률에서 용인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1)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정의 신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음.

현행법³⁾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을 갖추고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함)만이 존재함.

개정안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기준을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지정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함)을 통합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개정안 제11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 제11조의2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정의에서 지정 또는 등록된 법인·단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논리체계상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봄.

3)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략)

2.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완화 및 범죄경력조회 주체 변경

개정안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를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로 하고,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며, 아이돌봄사 범죄경력조회권자를 지자체장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되, 범죄경력조회 요청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아이돌보미</u> 로 활동할 수 없다. 1.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u> 또는 <u>피한정후견인</u> 2. ~ 9. (생략)	제6조(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 ----- <u>아이돌봄사가</u> <u>될</u> -----. 1. <u>18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후견인</u> ----- 2. ~ 9.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또는 <u>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u> ② (생략)	제6조의2(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u>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되려는</u> ----- ----- ----- ----- ----- ---- <u>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u> ----- -----. ② (현행과 같음)

가. 아이돌봄사 결격사유 18세 미만으로 완화

현행법 제6조제1호4)는 미성년자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법」 5)에 따른 성년의 나이인 19세 미만인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임.

그런데, 최근 청년의 사회참여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⁶⁾하였고,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완화⁷⁾되었음.

한편, 아이돌보미가 부족하여 2023년 신규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

4)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조정(25세 이상→18세 이상, 「공직선거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 2022. 1. 18. 개정·시행)

7) 7급 이상 공무원(교정·보호 직렬 제외) 시험 응시연령 완화(20세 이상→18세 이상,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16조제1항 : 2022.11.15. 개정, 2024. 1. 1. 시행)

※ 7급 이상 공무원 중 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한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은 41.2%로 저조한 수준이고, 특히 2023년 대기가구는 13,031가구로 평균 대기일수가 33일에 달해 2022년 27.8일 대비 더욱 늘어나고 있어 아이돌보미 공급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신청가구 연계 및 평균 대기일수 현황 >

(단위: 가구, %, 일)

구 분	2022년(A)	2023년(B)	B-A
신규 신청가구(A)	20,599	22,145	1,546
연계가구(B)	5,854	9,114	3,260
대기가구	14,745	13,031	△1,714
연계율B/A	28.4	41.2	12.8
평균 대기일수	27.8	33.0	5.2

주: 1. 대기가구는 연도말 대기가구 상태에 있는 가구수를 의미

2. 평균 대기일수는 신규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연계된 가구의 평균 대기일수를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이에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사람)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18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아이돌봄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아이돌봄사 인력 수급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⁸⁾은 아동의 보호·

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미성년자인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는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는 업무로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⁹⁾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의 연령을 서로 다르게 규정할 경우 법률 간의 상충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연령과 관련한 결격사유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9. (생략)

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봄사”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아이돌봄사의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연령(미성년자·18세 미만인 사람) 결격사유 현황 >

연령 결격사유	법률명	대상
미성년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 (만 12세 이하 아동 보호·양육 금지)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어린이집 근무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아 돌보미
	「모자보건법」	산후조리도우미
	「관세사법」	관세사
	「노후준비 지원법」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정제업자
18세 미만인 사람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선박직원법」	해기사
	「수상레저안전법」	조종면허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경비업법」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상특수 경비원
	「원자력안전법」	원자로조종사면허 등

또한, 우리 위원회에는 아이돌보미 연령 결격사유를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91, 정부 제출)이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나. 아이돌봄사 범죄경력조회 주체 변경

현행법 제6조의2제1항은 지자체장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사의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아이돌봄사 범죄경력조회권자를 지자체장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본인의 동의¹⁰⁾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고, 범죄경력은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1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

3.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자격, 자격관리 전담기관 신설, 명의대여 금지, 보수교육, 건강검진, 자격정지 및 취소 등 국가자격제도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32조,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5조(아이돌보미의 직무 및 책무) ① <u>아이돌보미</u> 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① <u>아이돌봄사</u> ----- -----.
② <u>아이돌보미</u>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u>아이돌봄사</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u>아이돌보미</u> 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u>아이돌봄사</u> ----- -----.
④ <u>아이돌보미</u> 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u>아이돌봄사</u> ----- -----.
⑤ <u>아이돌보미</u> 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u>아이돌봄사</u> ----- -----.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u>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u>	제7조(아이돌봄사의 자격) ① <u>여성가족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u>

현행	개정안
<u>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4. <u>아이돌보미의</u> 인성함양 5. 6. (생략) ③ <u>아이돌보미가</u>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u>아이돌보미의</u>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u>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아이돌봄사의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 -----<u>.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u> 1. ~ 3. (현행과 같음) 4. <u>아이돌봄사</u>----- 5. 6. (현행과 같음) ③ <u>아이돌봄사가</u> ----- -----. <삭제>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u>아이돌봄사의</u> 자격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u>아이돌</u> <u>보미</u>는 다른 사람에게 <u>자기의 성명</u>을 사용하여 <u>아이돌보미</u>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u>수료증을 대여</u>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u>아이돌보미</u>가 아닌 사람은 <u>아이돌보미</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u>시·도</u> <u>지사는 아이돌보미</u>의 양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u>지정기준</u>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0조(보수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u>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u>	<u>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u>할 수 있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u>자격증을 발급받거나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u>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u>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적성·인성 검사 및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u>아이돌</u> <u>봄사</u>는-----제7조에 따라 발급 받은 <u>자격증</u>을 빌려주거나 <u>자기의 성명</u>을 사용하여 <u>자격 관련</u>-----하여서는-----. ② 이 법에 따른 <u>아이돌봄사</u>가 ----<u>아이돌봄사</u> 또는-----. ③ 누구든지 <u>아이돌봄사</u> <u>자격증</u>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 <u>자격증의 대여</u>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는 <u>아이돌봄사</u>---<u>지정기준</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수교육) ① -----<u>안</u>

현행	개정안
<u>아이돌보미</u>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u>기간·방법</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u>아이돌보미</u>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0조의4에 따른 <u>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u>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u>아이돌보미</u>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① (생략)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 (생략) 3. <u>아이돌보미</u>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4. <u>아이돌보미</u> 교육기관 관리 등 양성·보수교육 관리·운영 5. <u>아이돌보미</u> 자격·이력·채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6.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u>이돌봄사</u>-----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기간·방법</u> 및 그 밖에----- -----.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u>아이돌봄사</u>----- -----. ② 제11조에 따른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 ----- ----- -----<u>아이돌봄사</u>-----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u>아이돌봄사</u> ----- ---- 4. <u>아이돌봄사</u> ----- ----- 5. <u>아이돌봄사</u> ----- ----- 6.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

현행	개정안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7.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8.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여성가족부장관은 <u>아이돌보미</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1. (생략) 2. <u>아이돌보미</u>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3. 4. (생략)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u>아이돌보미</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 ----- 7.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 ----- 8. (현행과 같음)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아이돌봄사 자격정지) ----- -----<u>아이돌봄사</u>----- ----- ----- ----- ----- ----- 1. (현행과 같음) 2. <u>아이돌봄사</u>----- ----- ----- ----- 3. 4. (현행과 같음) 제33조(아이돌봄사 자격취소) ----- -----<u>아이돌봄사</u>----- ----- -----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u>아이돌보미</u> 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u>아이돌봄사</u> ----- -----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기간에 <u>아이돌보미</u> 로 활동한 경우	6. ----- - <u>아이돌봄사로 활동한 경우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u>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아이돌봄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① 여성가족부장관이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②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여성가족부장관이 적성·인성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대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의 자격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7조).

둘째, 명의대여 금지와 관련하여 아이돌봄사가 다른 사람에게 아이

돌봄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안 제8조).

가. 아이돌봄사 자격제도 도입 필요성

현행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유형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을 통한 유형(아이돌보미)과 민간의 소개소 알선이나 직접거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유형(육아도우미)이 있는데,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는 지자체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육아도우미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원 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¹¹⁾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서 발급실적은 전혀 없다고 함.

민간의 육아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근무태만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베이비시터 등 민간 육아도우미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경우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가가 아이돌봄사 자격을 관리함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돌봄인력 실태 파악을 보다 용이하

11) 제19조의2(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육아도우미가 되려는 사람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로 정신 질환병력 여부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가 포함된 건강진단서
2.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및 등록 서비스제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등록 서비스제공기관의 경우 개정안에서는 등록을 유인할 수 있는 제재조치나 인센티브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등록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아이돌봄인력의 경우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도 수요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아이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관련하여, 제21대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23. 6. 28.) 심사시 아이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아이돌봄체계를 완전히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위원회 차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하여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고, 현행과 같이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를 존치하면서 육아도우미 신원확인 증명서의 항목을 늘리거나 신원확인증명제도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이돌봄인력에 대한 신뢰

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인력 국가자격제는 정부 차원의 공공·민간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 업체를 정책 인프라로 활용하여 돌봄서비스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보장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임.

나. 적성·인성 검사제도

개정안 제7조제1항은 ‘아이돌봄사 자격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의 경우 적성·인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개정안 제7조제3항은 아이돌봄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를 받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항간에 서로 모순이 있음.

자격증 부여 요건을 명시한 조항(안 제7조제1항)에서 교육과정 이수자와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 모두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7조제3항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재 아이돌보미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적성·인성 검사제도는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입되었지만,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선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재검시 적격 판정 요령 획득 우려)가 있다는 점, 적성·인성 검사 결과¹²⁾가 아이돌봄사 자격 부여 여부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성·인성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출연 근거 마련

개정안 제7조제5항 및 제6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의 자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연금은 구체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출연금 이외의 출연금은 일반적으로 사후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조금에 비해 집행상의 재량이 넓게 인정됨¹³⁾. 「국가재정법」 제12조¹⁴⁾에 따라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

12) 현재 적성·인성검사 결과 주의관찰, 주의요망 등급으로 나오는 경우 재검시, 상담 등을 실시함.

13)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5., 475면

14)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성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이에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출연금은 보조금에 비해 집행상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므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자칫 방만한 집행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자격관리 업무와 관련한 입법례¹⁵⁾를 보면,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업무는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동일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비를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으로 편성할 경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15) 「평생교육법」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2. ~ 5. (생략)

③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생략)

②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6. ~ 7. (생략)

③ (생략)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¹⁶⁾에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사업 영역으로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출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아이돌봄 사업과 관련하여 ① 서비스제공기관·광역센터 운영 지원(컨설팅·역량강화), ② 사업실적 관리, ③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운영 지원, ④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 ⑤ 인·적성 검사 운영 지원, ⑥ 민원대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 예산은 12.5억원 규모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인력은 총 인원 15명 중 정규직 3명, 공무원 1명, 계약직 11명으로, 연단위 위·수탁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매년 신규 채용되는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불안 및 이에 따른 서비스 품질 관리에 한계가 있음.

16)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 ⑥ (생략)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2. (생략)

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4. ~ 11. (생략)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⑩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개정안 제10조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봄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의 경우 보수교육비는 국가 등이 법 제26조17)에 따라 보조금(운영비)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지원하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수교육비를 지급(전액 지급, 아이돌보미 부담 없음)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국가 등의 운영비 지원은 불가능한바,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봄사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아이돌봄사에 대한 보수교육에 대한 비용지원의 근거는 없음.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는 모든 아이돌봄사의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아이돌봄사 보수교육과 관련한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17) 「아이돌봄 지원법」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마.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개정안 제10조의2는 아이돌봄사의 의무(현행 아이돌보미의 의무)로 건강진단 수검을 규정하고(시행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아이돌봄사를 채용하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의무(현행 광역지원센터의 의무)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¹⁸⁾(관련 벌칙·과태료 규정은 없음),

등록하지 않고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사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어도 활동을 제한할 규정이 없음.

동 규정의 취지가 결핵, B형간염 등 전염성 질병과 중증우울증 등 질환으로부터 서비스 대상 아이와 그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언적 규정이라 할지라도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활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아이돌봄사의 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18)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건강검진실시기준 제5조 제1항): ① 문진과 진찰 ②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③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④ 구강검진 ⑤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⑥ 인지기능장애 검사 ⑦ B형간염 검사 ⑧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⑨ 골밀도 검사, 노인 신체기능 검사 ⑩ 생활습관평가 ⑪ 정신건강검사(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

바.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업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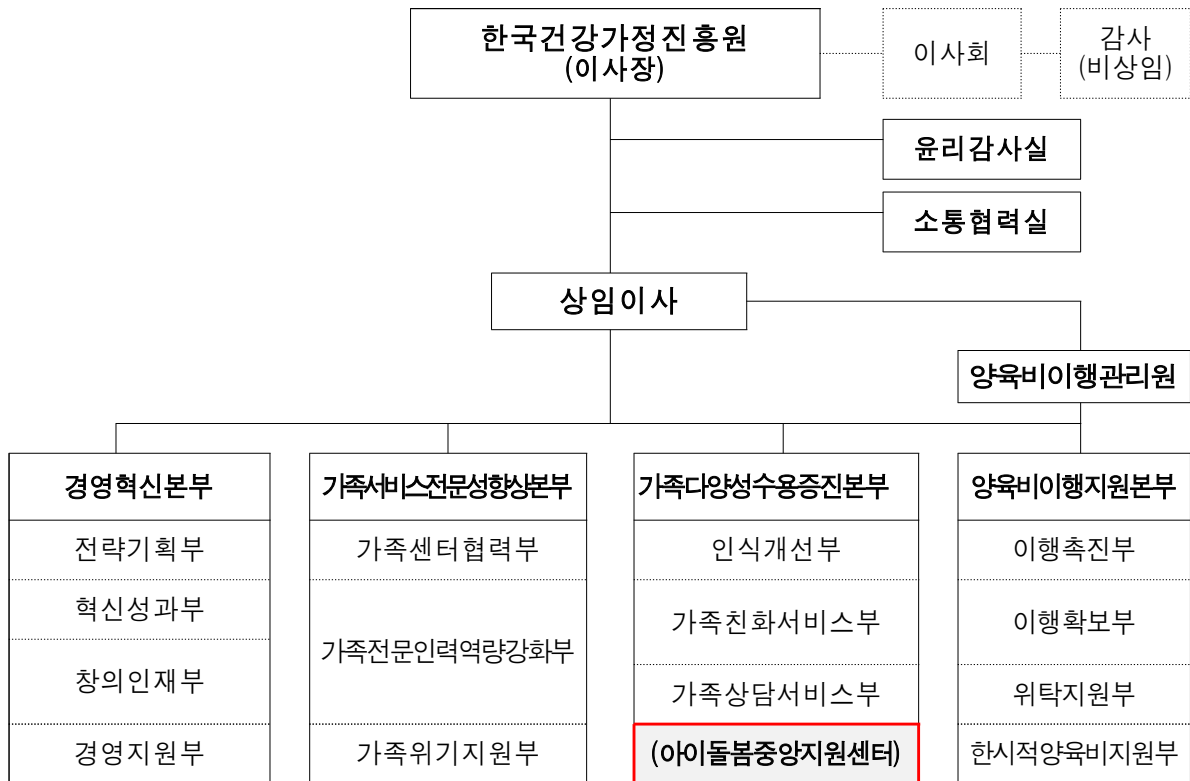
개정안 제10조의3은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업무를 아이돌봄사 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아이돌봄사와 관련된 업무로 변경하고,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종사자 교육훈련 업무를 추가함.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할 경우,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업무에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과 관련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을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지정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3년 이상 가족정책 및 아이돌봄 관련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중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의 2]」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있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조직 현황 >



자료: 여성가족부

4. 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 수행 주체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

개정안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지정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하도록 업무 수행 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4제2항제1호·제2호 삭제, 제13조제1항·제4항 및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u>아이돌보미</u> 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u>아이돌봄사</u> ----- ----- ----- -----.
② 제10조의4에 따른 <u>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u> 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u>아이돌보미</u> 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1조에 따른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은----- ----- ----- ----- <u>아이돌봄사</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원활하게 <u>아이돌보미</u> 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 <u>아이돌봄사</u> ----- ----- ----- ----- -----.

현행	개정안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u>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u> 2. <u>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u> 3. 지역 내 <u>아이돌보미</u>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 6. (생략) ③ ~ ⑤ (생략)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서비스기관은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기관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u>아이돌보미</u>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 -----. <삭 제> <삭 제> 3. -----<u>아이돌봄사</u>----- -----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①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아이돌봄사가</u> <u>아이돌봄서비스</u>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 -----<u>아이돌봄사</u> ----- -----. ③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 ----- -----.

현행	개정안
<u><신설></u> ⑤ 서비스기관은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 서비스기관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⑦ 서비스기관은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④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와 아이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미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u><삭제></u> ⑥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 --. ⑦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사----- ----- ---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¹⁹⁾에 따르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① 건강진단을 받지 아

19)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생략)

②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

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0조의2제2항), ②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제10조의4제2항제1호·제2호), ③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제14조제1항),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를 서비스제공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함(제13조제1항).

현행과 같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와 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수행 범위가 정해진 연혁을 살펴보면, 현행법 이전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소속 아이돌보미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를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 ⑤ (생략)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서비스기관은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가입, 이용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 연계 등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음.

그런데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 등으로 인해 아이돌보미 자격 및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은 노무 관리 등 증가하는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서비스제공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됨에 따라 소속 아이돌보미의 탄력적 수급에도 한계가 있어 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으로 개정·시행(개정: 2020. 5.19., 시행: 2022. 1. 1.)되었음.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시·도지사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 채용·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로부터 아이돌보미를 직접 배치받아 구체적·직접적인 노무 지휘를 하는 사용자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와 서비스제공기관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아이돌봄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²⁰⁾(이하 ‘「파견법」’이라

함)이 정하는 파견 대상업무²¹⁾에 해당되지 않아 「파견법」의 위반소지²²⁾가 있으며,

특히 현행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광역 규모 아이돌보미 인원에 대한 직접 채용 및 복무관리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등으로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보험가입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여전히 서비스제공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²³⁾, 2024년 7월 기준으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지 않은 시

2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1) 참고자료 2 참조

22)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의 근로계약 체결 주체는 시·도의 광역지원센터인 반면에 아이돌보미의 실제 근무 및 관리 주체는 시·군·구의 서비스기관으로 불일치함에 따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어 향후 법적 문제와 책임 소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법제처)

여성가족부가 노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서비스기관은 광역지원센터로부터 아이돌보미를 직접 배치받아 구체적·직접적인 노무 지휘를 하는 명실상부한 사용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광역지원센터와 서비스기관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며, 아이돌봄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파견 대상업무에 속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상기 파견관계는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23) 현실적으로 최대 5,600명(2023.12월 기준 경기 5,688명, 서울 4,037명 등)이 넘는 아이돌보미를 직접 채용·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이 시·도에 없어 지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도(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도 존재함.

한편, 이처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현행법대로 지정·운영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 등 319인으로부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2022. 3. 21.)가 접수된 바 있고²⁴⁾, 감사 결과 “해당 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 법적 쟁점 및 현실적 여건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률이 개정되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기가 곤란하게 되었고, 이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 및 아이돌보미 채용 조정 등에 대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주의·통보)”을 통보하였음.²⁵⁾

이에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채용 등의 업무를 서비스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업무의 주체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과 현실운영 체계가 괴리되어 있다는 점, 「파견법」 위반 소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법적 쟁점 및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불가피한 입법조치로 보임.

24) 여성가족부는 법 개정((2020. 5.19)과 시행일(2022. 1. 1.)간 준비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직전(2021년 12월 24일)에 임시적 조치로 아이돌봄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였고, 2022년 2월에 광역센터 지정 유예조치와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봄 가이드라인 내용을 “2022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에 포함하여 시행하였는바, 법 개정사항과 다르게 광역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임.

25) 정부는 제21대 국회에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를 다시 서비스기관이 수행하도록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 3.30. 정부안)」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다만,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개정된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공공연대노동조합(아이돌보미 조합원 가입)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의 수급계획 수립과 함께 직접 근로계약, 복무관리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는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아이돌보미 채용 등의 업무 수행기관을 변경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8, 정부 제출)이 회부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5. 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 신설 및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마련

개정안은 ① 아이돌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근무할 수 없도록 기관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자체장의 기관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 11조의5).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5(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u> 1.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6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다른 결격 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개정안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전달체계는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구분되는데,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기관이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아이돌봄사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기관이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정 또는 등록된 기관임.

< 중앙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서비스제공기관 지정·등록 규정 >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제10조의3(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2.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이돌봄사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4. 아이돌봄사 교육기관 관리 등 양성·보수교육 관리·운영 5. 아이돌봄사 자격·이력·채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7.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봄사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지역 내 아이돌봄사 수급 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 ⑤ (생 략)	제11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제11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 종사자 교육훈련 8.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 ④ (생 략)		

현행법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서비스제공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각각 아이돌봄 지원 정책 및 교육 수행, 지역 내 아이돌봄사 수급 조정, 지역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지원 및 서비스 홍보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함.

개정안은 해당 기관의 종사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과 연관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아이의 안전 보호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 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기관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는 아이돌봄사 자격 정지·취소와 관련된 결격사유(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제33조에 따라 자격

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를 제외하면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한데, ① 가정과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는 아이돌봄서
비스제공기관만 취급하고 중앙지원센터와 광역지원센터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 ② 기관 종사자에는 대표자, 임원 및 서비스연계 등 주
요업무 담당자 외에 단순행정보조직원도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단힌 공간에서 아이와 1:1로 대면하는 아이돌봄
사와 동일하게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격사유 도입 필요성과 기본권 제한을 비
교형량하여 필요최소한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²⁶⁾

또한,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경우 아이돌봄사, 육아도우미,
일반 직원 등을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등록 아이돌봄서비
스제공기관의 종사자에는 육아도우미도 포함됨.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육아도우미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채용되는 육아도우미는 결
격사유가 적용되고,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연계하거나 다른
민간 서비스기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는 결
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26) 유사 입법례

- 「영유아보육법」의 결격사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어린이집 근무자 모두 규정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결격사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나 임
원만 규정

< 아이돌보미(아이돌봄사)·종사자 결격사유 비교 >

현행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개정안 (아이돌봄사 결격사유)	개정안 (종사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18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18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현행과 같음)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	7의3. (현행과 같음)	7의3. (현행과 같음)

현행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개정안 (아이돌봄사 결격사유)	개정안 (종사자의 결격사유)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현행과 같음)	7의4. (현행과 같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8. (현행과 같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9. (현행과 같음)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개정안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휴업·폐업,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제반 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u>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u> <u>지정을 받아야 한다.</u>	제11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u>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u>
② <u>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u>	② ----- --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 -----.
③ 제1항과 관련된 <u>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u> 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u> ----- -----.
④ <u>서비스기관의 장은</u>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④ <u>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 ----- -----

현행	개정안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신설>	---. -----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신설>	
제12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① 시·도지사·시장·	제12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① -----

현행	개정안
군수·구청장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시설·인력 현황자료 및 <u>서비스기관 지정 취소</u> 이력 등을 <u>서비스기관의</u> 장로부터 제출받아 <u>아이의 보호자에게</u> 안내하여야 한다. ② <u>서비스기관</u>의 장은 해당 <u>아이돌보미</u>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취소 이력, 제18조의2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u>아이의 보호자에게</u>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 방법, 절차, <u>아이돌보미</u>의 정보 및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u>서비스기관</u>은 광역지원센터 소속 <u>아이돌보미</u>를 서비스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u>서비스기관</u>은 보호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u>아이돌보미</u>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u>서비스기관</u>은 <u>아이돌봄서비스</u> 제공 시 <u>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u>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 -----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취소·등록취소</u>-----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u>----- -----. ②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u>아이돌봄사</u>----- ----- ----- -----. ③ ----- ----- -----<u>아이돌봄사</u>----- ----- -----. 제13조(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①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아이돌봄사가</u> <u>아이돌봄서비스</u>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 -----<u>아이돌봄사</u>----- ----- -----. ③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 ----- -----. ④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은 <u>아이돌봄서비스</u>를 제공하는 중 발생한 <u>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봄사와 아이에게</u>

현행	개정안
경우 인근 지역에 <u>서비스기관이 없거나</u> 인근 지역 광역지원센터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 등 불편이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지속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 관리·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광역지원센터 및 <u>서비스기관</u>이 제10조의4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영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u>서비스기관</u>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8조의2(<u>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u>)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아이돌보미</u>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5조(<u>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u>) ① (생략)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수집·보유·이용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없거나</u>----- ----- ----- ----- ----- 제18조(광역지원센터 및 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평가) ① -----<u>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제11조제3항에 따른 ----- ----- ----- ② -----<u>지정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u>) ① -----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봄사</u>-----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u>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u>)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현행	개정안
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을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6조, 제10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u>아이돌보미</u> <u>결격사유</u>, <u>건강진단</u> 및 <u>자격정지</u>에 관한 정보 2. 제9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u>서비스기관</u> 등의 지정 및 <u>지정취소</u>에 관한 정보 <신 설> 3. (생략) 4. 제18조의2에 따른 <u>아이돌보미</u> 만 족도 조사에 관한 정보 5. ~ 7. (생략) ③ ~ ⑧ (생략)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u>서비스기관</u>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원센 터, 광역지원센터 및 <u>서비스기관</u>의 설치·운영자, 이 법에 따라 업무위 탁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1. 제6조, 제7조, 제10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u>아이돌봄사</u> <u>결격사유</u>, <u>자격</u>, <u>건강진단</u>, <u>자격정지</u> 및 <u>자격취소</u>에 관한 정보 2.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등록 등----- 2의2. 제11조의5에 따른 종사자 등 의 <u>결격사유</u>에 관한 정보 3. (현행과 같음) 4. -----<u>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u>-----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비용의 보조) ----- ----- ----- -----<u>지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u>----- -----.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 ----- <u>아이돌봄서비 스제공기관</u>----- ----- -----

현행	개정안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의 구체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지자체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안 제11조제1항).

둘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제1항).

셋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안 제11조의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를 신설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의 보호자 만족도 조사 대상에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함(안 제11조의4 및 제18조의2제1항).

넷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안 제13조의2), 여성가족부장관의 관리·평가(안 제18조제1항)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안 제26조)의 대상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한정하여 적용함.

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필요성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지정·운영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를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① 2023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가구는 1.3만 가구, 대기기간은 평균 33일 수준으로 현재의 공공 전달체계만으로는 돌봄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으나, 공적 돌봄서비스의 무한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② 부모들은 민간 돌봄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민간 돌봄 서비스를 믿고 맡기기 어렵다고 인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요구가 높은 실정임.

또한 ③ 민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며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곤란하고, ④ 가사 및 육아도우미 수²⁷⁾는 2020년 144천명, 2022년 114천명, 2023년 115천명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인력 등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게 하고, 포

27) 출처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육아도우미 통계는 별도 산출되지 않음

준화된 매뉴얼 또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을 정부의 관리체계 하에 포섭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홍보 효과 등을 얻을 수 있고,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자 가정은 보다 향상된 품질의 민간 돌봄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을 유인할 수 있는 지원 등 인센티브와 관련한 내용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음.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안 제11조의 2), 휴업 또는 폐업 신고(안 제11조의3),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안 제11조의5),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의무(안 제12조),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의 임무(안 제13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안

제14조), 비밀누설금지(안 제30조) 등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도 및 명령(안 제28조), 질문 및 검사(안 제29조), 벌칙(안 제35조), 과태료(안 제37조)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등록 여부는 순전히 민간기관의 자발적 의지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민간 기관이 등록을 하게 될지 의문시 됨.

특히 민간 아이돌봄 사업자의 경우 아이돌봄 사업만을 하지 않고, 베이비시터, 가사, 학습도움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어 아이돌봄사업만을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감수하면서 등록할 실익이 없으며,²⁸⁾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와 달리 민간 서비스기관의 경우 수요자 가정의 수요에 맞추어 가사나 학습을 중심으로 하면서 아이돌봄을 부가서비스로 제공할 경우 법적으로 경계가 불분명하여 등록제도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²⁹⁾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개정안 제18조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등록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아이돌봄서비스 질적 제고 부분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봄.

참고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제21대 국회 여성가

28) 공공연대조합.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어디로 가야하나?” 자료 중 발췌

29) 공공연대조합.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어디로 가야하나?” 자료 중 발췌

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23.6.28.) 심사시 공공연대노조(아이돌보미 조합원 가입)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완전 민영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아이돌보미, 육아도우미, 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봄사 고용 형태

개정안 제11조의2는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기준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위임하여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제1항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이돌봄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경우 지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같이 아이돌봄사를 직접 채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아이돌봄사 고용 여부에 대한 것은 전부 여성가족부령에 위임되어 있는 상황임.

한편,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입법화할 경우에는 기존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플랫폼 형태(아이돌봄사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이용자와의 연

계만 담당)의 운영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또한 법개정 직후에는 아이돌봄사 배출이 적을 수 있으므로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아이돌봄사 배치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 규모의 아이돌봄사 인력풀이 확보될 때까지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함.

그러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플랫폼 형태의 운영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등록제 도입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아이돌봄사를 직접 채용하지 않는 플랫폼 서비스 형태를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허용할 경우에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³⁰⁾에서는 법률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의 요건을 직접 규정하면서 가사근로자 고용을 인증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음.

3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

- 인증기관은 민법·상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
- 가사근로자는 위 법인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5인 이상 직접고용)
- 서비스 중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배상 수단 구비
- 인증기관의 대표자·임원은 법정 결격사유가 없을 것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사근로자는 정신질환, 마약, 형사처벌 관련 취업제한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서비스 종류·내용, 이용요금 산정기준 및 이용 절차 등 공개('가사랑' 누리집)
-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다.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규제

개정안에 따라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안 제11조의2), 휴업 또는 폐업 신고(안 제11조의3),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안 제11조의5),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의무(안 제12조),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의 임무(안 제13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안 제14조), 비밀누설금지(안 제30조) 등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도 및 명령(안 제28조), 질문 및 검사(안 제29조), 벌칙(안 제35조), 과태료(안 제37조)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현재 민간 서비스기관³¹⁾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31) 여성가족부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총 8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약 89.2%가 유료직업소개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고 약 64.3%는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직접 운영	플랫폼 연계 운영	플랫폼 미운영	총계
41(48.8%)	13(15.5%)	30(35.7%)	84(100%)

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개별법상의 의무·제한 규정을 각각 적용받고 있고, 최근 플랫폼운영자·이용사업자에 대한 규제 및 플랫폼중사자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률안 제·개정 논의도 활발하다는 점에서 향후 플랫폼 관련 규제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음.

특히, 「직업안정법」³²⁾에서는 등록 기준, 수수료 제한, 선급금 수령 금지, 겸업 금지 등 업자의 의무를 개정안보다 더 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하위 법령 등에서 등록 서비스기관에 대한 등록 기준, 의무 규정 등에서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³³⁾

32)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중략)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중략)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이하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④~⑥ (생략)

제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겸업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3) 대법원 관례(대법원 2000. 3. 23. 98두4528)는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영업의 성격과 내용 등이 다른 경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각각 갖추도록 하고 있음.

라.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한 서비스이용요금 지원 여부

현행법 제20조³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일정소득 이하 가구는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서비스이용요금을 지원받고 있음.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지정 또는 등록 서비스제공기관의 구분을 두지 않음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등록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을 이용할 때에도 서비스이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입법화할 경우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도 서비스이용요금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이용요금 지원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안 제13조의2), 여성가족부장관의 관리·평가(안 제18조)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고, 등록

34)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서비스제공기관의 돌봄서비스 연계 수수료를 제한 규정도 미비한 측면이 있음.³⁵⁾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우선 필요최소한의 등록과 관리 기준을 통해 많은 민간 업체를 제도 내로 포괄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추후 등록 기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함.

<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과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적용규정 비교 >

해당 조문	지정 기관	(신설) 등록 기관
안 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적용	미적용
안 제18조(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기관 관리·평가)	적용	미적용
안 제26조(비용의 보조)	적용	미적용
현행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현행 제22조(비용 지원의 신청), 안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적용	적용 가능

35)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도 정부 예산으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경우,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과도한 연계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일정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고, 최소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아이돌봄사 임금이 아닌 서비스기관의 수수료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봄.

마.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이행사항 등

개정안 제13조제3항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³⁶⁾’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봄사의 아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아이돌봄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이돌봄 지원 원칙에 비추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학대 방지 노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이행사항에 ‘아이에 대한 학대 방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개정안 제18조의2는 조제목을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8조의2제1항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봄사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제목은 두 종류의 만족도 조사를 포괄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가 적절할 것으로 보임.

36)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서비스기관 이행사항) 법 제13조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아이의 건강 및 위생 관리 등을 말한다.

7. 여성가족부장관 등의 시정명령권 신설 및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공표 등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신설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8조의2 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지정 취소 등) <신설>	제17조(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등) ① <u>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u> 1.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u>서비스기관</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u>지정</u>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u>지정</u>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지정</u>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3제3항, 제10조의4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u>지정기준</u>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u>서비스기관</u>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4. 5. (생략) 6. <u>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보미</u>의 아이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u>아이돌보미</u>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신설> <신설>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② ----- ----- -----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u>지정 또는 등록</u>-----. ----- ---<u>지정 또는 등록</u>-----. 1. ----- -----<u>받거나 등록을 한</u> <삭제> 3.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 ----- 4. 5. (현행과 같음) 6. 제13조제1항에 따라 <u>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봄사</u>----- ----- -<u>아이돌봄사에</u>----- ----- 7. <u>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u>이 <u>지정 또는 등록된 후</u> <u>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u> 8. 제1항에 따른 <u>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u> 9. 그 밖에 <u>정상적인 아이돌봄서비스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의

현행	개정안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u>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u>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8조의2(아이돌보미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u>취소 처분을</u>-----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등록할-----.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 취소의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①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운영 현황 등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②·③ (현행과 같음)

가. 여성가족부장관 등의 시정명령권 신설

현행법 제17조제1항제2호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제공기관이 시설 및 인력 등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개정안은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 전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자체장의 시정명령권을 신설하여,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지정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를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로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음.

지정 또는 등록 취소 전에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효율적 관리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의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17조의 제목은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등’인데, 안 제17조제2항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취소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제목을 내용에 맞추어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나.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공표

현행법 제28조의2제1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아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촉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운영 현황 등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

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문의 표현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실태조사의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8. 부칙 등

개정안은 아이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및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에 따라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을 규정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사자 등으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이돌보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본다. 제4조(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기관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서비스기관은 제17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4호 중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부 칙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3호 중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봄사”로 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3호 중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개정안은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을 규정함으로써 아이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및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5년 7월 1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돌봄인력 국가자격제와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의 시행일을 국민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국회 심사기간,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안 제11조의2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 시행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중에 있는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649

[참고자료 1] 주요 내용 현행·개정안 비교

주요 내용		현행	개정안	비고
정의		아이돌보미(공공) (제2조제4호)	아이돌봄사(공공+민간)	
		육아도우미(민간) (제2조제5호)	육아도우미(민간)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등록)	
범죄경력조회 주체		지자체장	여성가족부장관	
결격사 유	연령	미성년자	18세 미만인 사람	
	기관 종 사자	<신설>	아이돌봄사 결격사유와 동일	
자격증	요건	교육과정 수료하고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자	현행과 동일(아이돌봄사자격증 발급 추가)	돌봄인력 국가자격제
	전담기관	<신설>	자격관리 업무 전담기관 지정(신설)	
지정 서비스제공기 관(공공)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지자체장에게 지정 신청	지자체장 지정·운영 의무	
등록 서비스제공기 관(민간)		<신설>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지자체장에게 등록	서비스제공 기관 등록제
아이돌보미 채용 등 업무수행기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광역지원센 터 업무 조정
중앙지원센터		아이돌보미 관련 양성교육, 자격 등 정보시스템 관리	아이돌봄사 관련 양성교육, 자격 등 정보시스템 관리	
		지정서비스제공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종사자 교육훈련	등록서비스제공기간까지 사업범위 확대	
		지정 신청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 공기관 휴업·폐업 신고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신설>	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시 신고의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휴폐업시 신고의무 신설
보호자 만족도 조 사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과 아이돌봄사	
보호자에 대한 아 이돌봄서비스 안내		지자체장이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이력 등 안내,	아이돌봄제공기관 전체와 아이돌봄사로 대상 변경	

주요 내용	현행	개정안	비고
	아이돌보미 인적사항 등 제공		
아이돌봄서비스기관의 임무	지정서비스기관에 대한 임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임무로 확대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여성가족부 장관의 관리·평가, 운영비 보조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서비스제공기관(등록 서비스제공기관 제외)	
시정명령권	<신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에 대한 시정명령권(신설)	시정명령권 신설
실태조사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3년 주기)	운영현황 등 아이돌봄 서비스 전반 실태조사 및 결과공표	

[참고자료 2] 국가자격제도 관련 국내 입법례

구분	청소년상담사 (3급기준)	사회복지사 (2급기준)	보육교사 (2급기준)	요양보호사	아이돌봄사
근 거	청소년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아이돌봄지원법
교 육 (신청·모집·이수)	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장관 지정 교육기관	시·도 지정 교육기관	시·도 지정 교육기관	시·도 지정 교육기관
양성교육 시간 (신규기준)	대학 이상 관련 학위소지자 (100시간 연수)	전문대졸 이상 사회복지 관련 17개 교과목 이수	교육훈련시설 교육 과정 22과목 이상 65학점, 과목당 평가점수 70점 이상	240시간 이론(80), 실기(160)	120시간
자격 시험 (문제출제·시험· 합격발표)	산업인력공단	무시험 (교육이수)	무시험 (교육이수)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무시험 (교육이수)
자격 검정 (서류검정· 결격사유 조회)	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사회복지사 협회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아이돌봄 자격제도 전담기구 (중앙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가능)
전담기구 명칭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연수부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인재개발 자격관리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자격관리TFT	
자격증발급 (신청·교부·관리)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보수교육 (시기, 시간, 대상)	의무대상기관 종사하는 상담사 -매년 8시간 이상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매년 8시간 이상	보육시설종사자 -3년마다 40시간	2년마다 8시간 이상	자격취득자(매년 16시간 이상)
수여권자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여성가족부장관

[참고자료 3] 돌봄인력 관리 체계 해외 사례

국가	관리방법	관리대상	이용방법	이용 수수료
미국 캘리포니아 주 -트러스트 라인 (Trust-Line)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여부를 파악하여 등록	- 모든 육아도우미 인력대행사의 보유 인력 - 주 또는 연방 보육 보조금을 받는 자격증이 없는 민간 육아도우미(의무)	부모가 트러스트라인으로 전화 → 육아도우미 지원자의 실명 및 운전면허번호로 등록 여부 확인	이용수수료 : 이용자가 육아도우미 신원 조회 시 약20만원(143달러) 지불 *24.8. 원/달러 환율 기준
영국 -Ofsted(교육기 준청) 자격관리	민간 육아도우미 자격 점검 및 등록, 관리	8세 미만 아동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돌보는 가정보육교사 (가정보육교사) 본인 및 동거인 중 16세 이상인 자의 범죄기록, 응급처치 자격증, 아동 보육 훈련 이수증, 신체검사 설문지 등 (사적도우미) 범죄기록, 응급처치 자격증, 아동 보육 훈련 이수증, 공적 책임보험	Ofsted 홈페이지에 보육교사의 등록번호를 입력 확인	육아도우미 등록 수수료: 연간 60,000원~390,000원 (35~220파운드)내외 *24.8. 원/파운드 환율 기준
일본	- 가정방문 육아도우미 지자체장에게 신고 - ‘아동 돌봄서비스 매칭사이트 가이드라인 적합 상황조사 홈페이지’에 등록	- 가정에 방문하여 아동을 돌보는 자 - 돌봄서비스 매칭사이트 운영자	육아도우미 매칭사이트(인터넷을 통해 육아도우미와 보호자를 중재하는 서비스) 사용	플랫폼에 따라 다름
호주	- 육아도우미의 자격요건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않고, 아동관련 직종 전체에 대해 사전자격심사 제도 및 경찰신원조사 제도 필수 -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 업체 승인(재택케어서비스)	서비스제공업체 및 보육서비스 수급자 (재택케어서비스)	- 고용주인 부모와 민간육아도우미 간에 정부가 정하는 공정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계약 체결 - 승인된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 업체를 통해 해당 가정에 보육서비스 제공(재택케어서비스)	플랫폼에 따라 다름

